

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○ 존경하는 박상혁 위원장님과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!

국민의힘 서초구 제3선거구 고광민 의원입니다.

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.

○ 본 개정안은 「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· 관리에 관한 법률」이 2024년 1월 개정되어 같은 해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, 조례의 정의 조항과 운영 규정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여 교육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이나 법적 공백을 예방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.

○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의 정의 조항을 법률에 맞게 정비하여 용어 사용의 일관성을 확보하였습니다.

조례 적용대상을 「유아교육법」 및 「초 · 중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로 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부합하도록 하고, 법령과의 정합성을 높였습니다

또한, 학교복합시설 설치 협의 시 사용되던 용어인

“운영 주체” 를 “운영관리자” 로 변경하고,
심의 기구에 “유치원운영위원회” 를 포함하여
유치원 복합시설 설치 시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

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시 고려사항인
범죄예방디자인 기법 적용 기준을 교육규칙으로 위임하여
실행 기준을 명확히 하고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였습니다.
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,
말씀드린 제안 취지를 바탕으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
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